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대상에 총중량 2.5톤 이상의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차량이 해당되고 있지만, 2019년 6월 1일부터는 총중량 2.5톤 미만 자동차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저공해 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

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만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등 자동차 중량이나 사용연료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형평성 해소 및 시민편익 개선 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중량 2.5톤 미만이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명령과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휘발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개편에 따라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에 차량공해저감과장을 추가하고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